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40호)
- 황 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28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 취지	5
2. 검토 의견	6
※ 참고자료	14

I . 제안경위

1.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2640)

가. 발 의 자 : 성일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8.

다. 회 부 일 : 2024. 8. 9.

2. 황 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3428)

가. 발 의 자 : 황 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30.

다.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안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 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선택할 시기인 대학 재학 기간 중 장교 지원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선발이 대학 재학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동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을 제고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자 추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할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62조의2).

2. 황 의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의 경우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 대하여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졸업생의 경우 동일한 전형에 선발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대학 졸업생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우수한 인력이 보다 원활하게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취지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성일종의원안”)과 황 희의원 대표 발의안(이하 “황 희의원안”)은 내용상 관련성이 있으므로 병합하여 검토함.

□ 개정안들은 대학 재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을 졸업생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단기 복무 장려수당을 단기복무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다만, 차이점을 보면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대상에 있어

성일종의원안은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사람’으로 규정 하려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 지정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자 하며,

황 희의원안은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사람’으로 규정하며, 단기 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에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예정인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

2. 검토 의견

- 개정안들은 대학 재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을 졸업생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성 일 종 의 원 안	황 희 의 원 안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 ----- ----- ----- ----- ----- ----- ----- ----- -----.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u>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u>	3. <u>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사람-</u> ----- ----- -----	3. <u>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사람-</u>

현행	성일중 의원안	황희 의원안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 ----- 4.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람	----- -----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예정인 사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단기복무장려금 제도는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군·학사장교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임. 2024년 기준 단기복무장려금은 1인당 1,200만원을 지급하며, 임관 이전(대학 재학 중)에 지급함(비과세).

한편, 단기복무장려수당 제도는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¹⁾에 따라 우수한 자질의 부사관을 획득하기 위해 부사관 임관 후 2개월 이내에 봉급과 함께 지급하고 있음. 2024년 기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며, 임관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복무장려금과 다르게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음²⁾.

□ 현행법에서 학사장교 사관후보생 선발은 재학생 또는 학사학위를

1)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장교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은 임관 전에 지급되는 보상 차원으로 비과세하는 반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임관 후 지급된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취득한 사람(졸업생) 모두 가능하나,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³⁾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한정⁴⁾하고 있음.

따라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졸업생)은 학사장교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충족되나,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사장교에 지원할 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임.

또한, 단기복무부사관은 학군·학사장교와 같이 일정 기간의 복무를 약정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단기복무장려수당만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⁵⁾.

□ 따라서, 개정안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교 지원율을 제고하고⁶⁾,

3)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재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구분한 이유는 대학교 재학 시절 학사장교 지원을 염두에 두지만 미선발될 가능성을 고려(미선발시 현역 등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하여, 진로 선택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장교후보생 제도(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를 마련한 것임.

5) “한 달 소득세 갑자기 2백만 원” 장교 아닌 부사관만 받는 세금폭탄, KBS, 2024.4.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4599&ref=A>) 등 참조

6)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병 봉급 인상 및 휴대폰 사용 등 처우 개선으로 인해 학군·학사장교 지원율이 하락하는 상황임.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학군장교 지원율	3.0 : 1	2.7 : 1	2.5 : 1	2.3 : 1	1.6 : 1
학사장교 지원율	2.8 : 1	2.4 : 1	2.6 : 1	2.4 : 1	2.1 : 1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부사관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단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최근 3년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졸업생) 학사장교로 임관한 인원은 평균 484명임.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졸업생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학사장교에 지원할 금전적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 확보 및 2023년 기준 2.1:1 까지 떨어진 학사장교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에 대해 성일종의원안은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사람(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황 회의원안은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사람(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자 함.

양자의 개정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성일종의원안은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의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과 규정 범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황 회의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개정안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성일종의원안은 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자 하고, 황 회의원안은 법 제6조제7항7)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함.

□ 다만, 성일종의원안과 같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면, 장려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위임 규정으로써 어떠한 인원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대한민국헌법」상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8)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9).

□ 국방부는 성일종의원안과 황 회의원안을 종합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단기복무부사관 중 가산복무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10) 등을 제외하기 위해 단기복무부사관이 될 예정인 사람 중 구체적인 지급대상자 지정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

7)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 8)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9)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헌재 1991. 7. 8. 91헌가4)
- 10)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는 입장이며,

개정안 제62조의2제1항제3호의 괄호 안 내용인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제4호에도 적용하기 위해,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제62조의2제1항 단서로 옮겨서 규정하자는 입장임(참고자료 참조).

- 한편, 국방부는 2024년 현재 법적 근거 없이 학사장교에 지원한 대학 졸업생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개정안 부칙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임관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을 신설하여 해당 지급을 정당화하자는 입장임¹¹⁾.

또한, 안 제62조의2제1항4호(단기복무부사관이 될 예정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람에 장려금 지급)에 대해 대통령령 개정 및 관련 예산편성 등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 적용시기를 2026년부터 하도록 부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²⁾.

- 국방부의 부칙에 대한 수정의견 중 제2조(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는 2024년 6월에 임관된 학사장교¹³⁾(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원한 사람 포함)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는

11) 2024년 학사장교 선발 및 임관 일정
육군: (선발) '23년 8월 및 11월 → (임관) '24년 6월
공군/해군/해병대 : (선발) '24년 2월 → (임관) '24년 6월
(선발) '24년 8월 → (임관) '24년 12월

것으로써 진정소급입법¹⁴⁾에 해당함.

헌법재판소 결정례¹⁵⁾에 의하면,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바,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칙 수정의견 중 제3조(단기복무부사관이 될 예정인 사람에 대한 적용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에 맞추어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은 폐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성일중의원안, 황 회의원안)	국방부 수정의견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관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단기복무부사관이 될 예정인 사람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임관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12) 13) 개정안의 시행이 2024년 12월 이후면 12월 임관자도 포함

14) 진정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임. 국방부 수정의견을 적용하면, 2024년 6월에 기 임관한 학사장교들은 단기복무장려금의 대상자가 아니라 이미 임관한 소위로서 법적 신분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15) 헌법재판소 1995. 12. 28. 95헌마196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1.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 수정의견

현행	성일종의원안	황희의원안	국방부 수정의견
제62조의2(장려금 의 지급) ① 각 군은 우수한 인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 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 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 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장려금 의 지급) ① -- ----- ----- ----- ----- ----- -----. ----- ----- -----.	제62조의2(장려금 의 지급) ① -- ----- ----- ----- ----- ----- -----. -----.	제62조의2(장려금 의 지급) ① 각 군은 우수한 인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 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 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 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u>하고,</u> <u>제3호 및 제4</u> <u>호는 군의 인력</u> <u>운영상 필요한</u> <u>경우로 한정하</u> <u>여 지급할 수</u> <u>있다.</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 음)
3. <u>예비장교후보</u> <u>생이 아닌 대</u> <u>학 재학생으</u>	3. <u>지원에 따라</u> <u>사관후보생이</u> <u>될 사람</u> -----	3. <u>예비장교후보</u> <u>생이 아닌 대</u> <u>학 재학생 또</u>	3. <u>예비장교후보</u> <u>생이 아닌 대학</u> <u>재학생 또는 졸</u>

현행	성일중의원안	황희의원안	국방부 수정의견
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 보생이 될 학 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 한 경우로 한 정한다) <신 설>	----- ----- ----- ----- ----- ----- 4.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람	는 졸업생으 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 보생이 될 사 람----- -----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 무 부사관이 될 예정인 사 람	업생으로서 지 원하여 사관후 보생이 될 사람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이 될 예 정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